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적용 범위 명확화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34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533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29조의3)	2

I.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533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7.

다. 회 부 일 : 2025. 12.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임금체불·산업재해·불법외국인고용 등으로 영업정지·과태료·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되는 하도급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미 체결된 하도급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가.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u>참여제한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 ----- ----- ----- ----- ----- ----- ----- <u>참여제한은</u> <u>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에 한정하고,</u> <u>그 기간은</u> ----- -----.
1. ~ 6. (생략) ② ~ ⑦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²⁾ 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 과태료

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
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
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
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
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
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
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³⁾,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업자⁴⁾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참여가 제한되는 하도급 공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처분이 종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처분 이후에 신규로 참여하려는 하도급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4조⁵⁾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 처분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받은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
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을 감안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도 신규로
참여하려는 하도급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개정안은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의 적용 범위를 현행법 제14조(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생각됨.

한편, 하도급 참여 제한 요건 중 제29조의3제1항제2호⁶⁾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4호’는
2019.11.26.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현재는 ‘제26조제2항제7호’에

5)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
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
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
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규정⁷⁾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삭제 <2019. 11. 2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11.26. 일부개정, 2020. 5.27.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과태료) ② <u>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u>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u>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u>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u>(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 <삭 제>